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717

발의연월일: 2020. 9. 10.

발 의 자: 박덕흠 • 윤두현 • 하영제

이명수 · 백종헌 · 송언석

김용판 · 김예지 · 정희용

강민국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조세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것으로서 현행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총액을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음.

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비교적 고가의 주택에 대해서 부과되거나 부동산을 다수 보유한 국민에게 부과하는 소위 부자세에 해당되므로 해당 재원을 경제적 약자의 주택보급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해야 한다 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총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택도시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2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덕흠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371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 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 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총액"을 "총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교부세의 재원) ① 교부세	제4조(교부세의 재원) ①
의 재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2
종합부동산세 <u>총액</u>	<u>총</u> 액의 100분의
	<u>50</u> 에 해당하는 금액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